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5월 12일을 기준일로 정하며,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우성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5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6
신라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경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